

2005. 11.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읍면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
일부 개정조례안
- 충주시리·통 및 반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- 충주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- 충주시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005.11. 9	2005.11. 9	2005.11.14	2005.11.14	총무과장
충주시리·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"
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기획감사과장
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"	"	"	"	문화회관관리소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교현2동과 연수동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행정구역 경계변경
 - 충주시 교현동 6필지 2,231m²을 연수동으로 편입

나. 충주시리·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지역 여건의 변화로 인구 및 세대수가 증감된 지역의 리·통·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리통반 조정
 - 반 조정 : 감 12개반, 증설 3개반

다.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주민소송제도를 도입(2005. 1. 27 개정)하면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

2) 주요내용

- 주민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청구인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조정

라.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관아갤러리의 대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함

2) 주요내용

- 관아갤러리를 문화회관관리소의 관리대상시설로 함(안 제2조 및 제3조)
- 관아갤러리의 시설사용료를 정하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 일부항목의 사용료를 조정(안 별표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

도시개발로 인하여 행정구역의 경계가 현실과 맞지 않은 교현2동 제일감리교회 등 인근의 6필지 675평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,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임

- 현재의 도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

나. 충주시리·통 및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

인구 및 세대수의 증감에 의하여 달라진 주민의 생활여건을 행정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다.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

지난 2005. 1. 17일 주민의 행정참여 및 권익보호, 행정의 투명성과 공익성 향상 등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보완과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여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

-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법정 청구인 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의 조례개정 이라고 판단됨

라.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는 전시공간인 관아갤러리에 대한 대관료를 정하고 문화회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또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- 관아갤러리의 대관료는 전시실 규모가 비슷한 문화회관관리소의 전시실 대관료와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
- 그 외 개정사항은 대관 시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이 도입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“없음”

나. 충주시리·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“없음”

다.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“없음”

라.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▶질의 : 관아갤러리를 하게된 동기는?

○답변 : 전시공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

▶ 질의 :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총에 무상임대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수는 없는가?

○ 답변 : 현재는 예술품 등 부족, 앞으로 예총과 협의하여 개선하겠음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. 충주시리·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임

- 가. 충주시읍면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나. 충주시리·통및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다.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라. 충주시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